

대전관광공사 자금운용내규

제정 2024. 10. 7. 내규 제 4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자금 운용과 통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금운용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은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한다.
2. “기준수익률”은 운용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비교 대상 수익률을 말한다.
3. “목표수익률”은 자금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4. “허용위험한도”는 자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의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제3조(운용원칙) 여유자금의 운용은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함으로써 공사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자금 운용

제4조(자금운용계획의 수립) 합리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운용 가능한 자금의 규모와 시기를 예측하여 매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상품 운용) 자금담당부서장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금융기관의 선정) 자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거래대상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

제7조(거래제한) 자금담당부서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용자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제8조(금융기관 예치한도) 위험 분산을 위하여 거래대상 금융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운용자금 한도를 정한다. 다만, 공사 지정금고은행은 예외로 한다.

1.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 기관별(전 지점 합산) 운용자금 최대 500억원
2.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기관별 (전 지점 합산) 운용자금 최대 300억원

제9조(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 ① 목표수익률은 당해 연도 운영자금 규모, 허용위험한도,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② 기준수익률은 운용 금융상품에 대응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시하는 금리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산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 운용 전략에 관한 자문
2. 채권시장의 동향과 경기전망 예측
3. 사업수행을 위한 원활한 자금 확보 계획에 관한 자문
4. 자금 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자문
5. 기타 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금 담당 부서의 소관 실·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금담당부서장(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금융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금융기관 전문가 중에서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내부위원은 자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금담당부서의 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 할 수 있다.

제14조(외부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 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3.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5조(경비지급) 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1. 외부위원의 위원회 수당, 여비, 기타 필요 경비
- 2. 채권시장 및 주요 금리 정보 수집을 위한 유료 정보 서비스
- 3. 금융자료 수집을 위한 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등

제4장 기타 사항

제16조(위험관리 원칙) ① 자금담당부서는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자금의 위험을 관리한다.

- ② 자금담당부서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추

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주의의무) 자금 운용 업무와 관련된 담당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직원은 자금 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금지하며,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